

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. 5. 30 선고 2018가단25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8. 5. 2.

판결 선고 2018. 5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85. 11. 28. 접수 제225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김태현

별지